

해외직구 공산품 관련 규제 현황 및 소비자의 역할

최근 해외 직접구매 제품의 안전성 문제 및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직배송, 구매대행 등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등 제품안전관련 정책의 적극적 실시 예고



허 경 옥 교수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우리 사회에서 최근 화두는 해외직구이다. 해외직구는 2011년 4,800억원 규모에서 2013년 1조원 돌파, 최근 2조원을 돌파했다고 한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소비자 개인의 사용을 목적으로 구입하는 의류 또는 화장품의 경우 200불까지 관세 없이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 구매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외 직구 불이 일고 있다. 5~7년전 젊은 주부들이 유아용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기 시작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60대도 해외직구를 배우고 싶어 한다는 뉴스가 보도되기도 하였다. 해외직구 주요 구매자는 30대 177만 건(52%), 20대 77만 건(22%), 40대 56만 건(16%)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매품목으로는 화장품 42만 건, 건강식품 67만 건, 의류/신발 133만 건 순이다 (IT데일리 2014년 10월 27일).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 제품의 안전성 문제 및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서 직배송, 구매대행 등의 방식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공산품/전기용품의 경우 공산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등에 정한 인증대상 제품의 경우 반드시 인증을 득한 후에 판매해야 한다. 즉, KC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국내 유통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상황에서 G마켓/옥션 등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은 최근 미인증 공산품 및 전기용품 판매 방지를 위해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안전규제 강화는 해외 직접구매 대행업체의 74%가 불법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 때문이다. 해외 수입품 직접 구매(직구) 대행업체 10곳 중 7곳이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4-03-05 경향신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13년 수입품 구

매대행(제품 수요자를 별도로 모집한 뒤 해외에서 수입해 판매) 업체 100곳을 조사한 결과 불법제품을 판매한 업체가 74곳으로 위반율 74%로 나타났고 9.7%를 기록한 대형마트 같은 일반 판매업체 위반율의 7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체와 수입업체의 위반율은 각각 40.3%와 35.7%였다. 해당업체들은 관련법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에서 제품 안전테스트를 받고 KC 인증마크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불법제품 적발 건수는 2009년 270건에서 2013년 695건으로 4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위반율도 2009년 9.8%에서 2011년 11.6%, 2013년 15.1%로 높아지고 있다. 품목별로는 조명기기가 19.4%로 가장 많았고, 완구 10.8%, 전기온수기 7.5% 순이었다. 이처럼 해외직구 구매대행,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제품안전을 확보하고자 정부 등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쇼핑몰, 구매대행업체 판매 수입 공산품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고자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마트, 롯데닷컴, 이베이 등 9개 유통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소비자피해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해외직구 관련 제품안전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구매대행업자의 제품안전 책임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거의 전 제품에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장난감뿐만 아니라 옷과 기저귀 등 일상적인 생활용품들도 포함된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어린이용 침구와 의류, 완구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려고 마련된 법이다. 특별법 시행 전까지는 안전규정에 못 미치는 제품을 제조한 업체에만 벌금이나 리콜 등의 규제를 내렸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이후부터는 유통업체나 판매를 중개하는 업체, 구매대행업자 등도 책임을 지는 사업자 대상이다. 사업자들 뿐만 아니라 소규모 공동구매 형식으로 어린이용 제품을 해외 직구하던 소비자들의 구매·판매과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물론 소비자가 개인이 쓸 용도로만 직구방식으로 해외에서 구매하는 경우 안전기준검사 등의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량으로라도 제품을 팔 경우에는 새로운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자신이 직접 해외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이상 거쳐서 해외 어린이제품을 구매하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2. 해외서 인증 받아도 KC 마크 필요

어린이용제품의 경우 해외에서 인증을 이미 받은 제품이라도 한국의 KC인증을 받아야 한다. KC마크 인증을 받지 않은 수입제품을 유통하면 첫 적발 시 250만원, 2·3차 적발 시 각각 280만원, 300만원 수준으로 적지 않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과태료는 상품 한 종류당 부과되기 때문에 소량이라도 여러 종류의 상품을 오픈 마켓이나 인터넷 중고장터 등에 게시한다면 그 액수는 커지게 된다.

구매대행업체들은 추가 비용이 발생해 가격이 올라가면 시장 수요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반면, 어린이 제품 제조·수입업체들은 해외 직구로 빠져나가던 소비자들을 붙잡을 수 있어 환영하는 입장이다. 해외 직구로 유통되는 어린이용 제품의 대부분이 미국·일본·유럽에서 온 것이라 각 지역의 자체 어린이 제품 인증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려면 그와 별도로 KC마크를 받아야 한다. 일부 구매대행업체는 인기 있는 해외 아동용품 브랜드는 거의가 한국보다 더 까다로운 유럽 CE 인증까지 받았는데도 별도의 국내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정책이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증과정에서의 수수료 등으로 가격인상이 불가피한데, 이 부담이 결국은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4년 6월 이후 어린이용품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은 당연하지만 시행 직후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법이 시행되는 6월 4일 이후로도 당분간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3. 부정 해외 수입시 벌금

해외직구는 제품이 필요한 사람으로부터 제품의 구매를 의뢰받아 구입의 전 과정을 대행하는 것이 본래적 의미이다. 그러나 판매를 목적으로 대량 유입되는 의약품은 이 같은 해외직구의 본래 의미를 벗어난다. 사업자가 실수요자인 것처럼 명의를 도용해 면세를 통과한 후 제품을 판매했다면 이는 관세법 제 269조 제 2항 제1호의 밀수입죄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넘어 의약품의 해외직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약사법 또한 ‘의약품 판매는 약국을 개설한 자 혹은 약국’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1인의 수요가 아닌 해외직구 활용 판매자가 의약품 판매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해외직구 의약품 판매는 불법이다.

개인의 사용 목적으로 주어지는 면세혜택을 이용해 일부 판매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일명 ‘밀수죄’로 간주할 수 있는 ‘부정수입’ 범죄가 늘고 있다고 한다. 언론에 따르면 30대 가정주부들에 의한 유아용품의 부정수입 건수가 많다고 밝혀지고 있다. 부정수입의 경우 적발시 벌금, 과금, 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2천만원 이하의 경우 원가의 20%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소비자가 이 같은 불법적 경로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을 수 있다. 불법적으로 해외직구 물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물론 그 ‘의도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구매하는 소비자는 ‘밀수품 취급죄’로 성립 될 수 있어, 벌금, 과금, 과료, 추징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반수입신고와 달리 목록통관은 자가 사용 물품에 대해 별도의 신고 없이 물품을 그대로 들여올 수 있어 해외직구족들이 널리 애용하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로 관세나 부가세 등의 세금이 면제된다. FTA 협정에 따라 미국은 200달러 미만, 유럽은 100달러 미만의 가방, 모자, 액세서리, 의류, 신발, 가구 등의 물품에 대해선 목록통관이 가능하다. 이처럼 목록통관이 직구족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이지만 규정을 잘 몰라 의도치 않게 부정수입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면서 일부에서는 부정수입에 대한 벌금 수준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부정수입 적발시 벌금 수준은 물품원가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가의 20%를 벌금으로 산정하며 벌금 최저액은 수입건당 10만원이다. 만약 10만원의 물품을 부정 수입했다면 물품원가의 20%를 벌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2만원만 내면 되지만 벌금 최저액이 10만원으로 설정돼 있어 무조건 1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최근 벌금 수준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관세청은 부정수입 벌금 최저액 기준을 폐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수입 물품원가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 20%의 벌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은 그대로 놔두고 벌금 최저액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있다.

4. 해외직구에서 주소 도용시 과태료

폭발적인 해외직구 증가로 마약류를 비롯한 안전위해물품 반입이 늘어나고 있어, 관세청은 특송물품을 원래 주소지가 아닌 곳에 배달하면 최대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다(조세일보, 2014년, 2월 18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4년 2월 특송물품의 실제 배송지를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택송품 운송업체에 최대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따라서 택송품 운송업자가 세관에 실제 배송지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하인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물건을 배송하면 1차 적발 때는 10만원, 2차는 25만원, 3차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택송품 운송업체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특송물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를 매월 15일까지 관세청 전자통관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특송물품은 한진, 대한통운, 페덱스(FEDEX) 등의 택송품 운송업체가 국내로 반입하는 물건을 뜻하며 최근 해외직구 등이 인기를 끌면서 특송 물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들 택송품 운송업체가 반입하는 상업 서류나, 견본품, 100달러 이하의 소액 물품, 목록통관의 경우에는 따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배송기간이 단축되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택송품 운

송업체가 이를 이용해 실제 배송되는 물품과 서류상의 물품을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위해물품 반입 위험성이 커졌다는 비판도 함께 받으면서 관세청은 각종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해외직구 남용이 급증하면서 신고포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 해외직구 남용행동에 대한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권익위원회에 개인소비자가 해외직구 남용 행위에 대한 신고시 벌금액 10분의 1 포상금을 주기로 한 바 있다.

5. 방송통신기기의 규제 강화

2014년 12월부터 전파법이 개정되어 오픈마켓이 전자파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방송통신기기를 판매하면 불법이다(씨넷코리아, 2014년 9월 17일). 오픈마켓 등 국내 쇼핑몰 등에서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들여온 통신 및 가전 기기를 판매하면 개정된 전파법에 따라 불법이다. 2014년 12월 4일부터 누구든지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행 또는 수입을 대행해서는 안 된다(전파법 제58조 2의10항).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금지 품목에는 스마트폰을 포함한 TV, 모니터, PC, 스피커 등 주요 가전기가 모두 포함된다. 물론, 소비자가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 구매 사이트 또는 해외에서 1인당 1대의 기기를 들여오는 것은 기존처럼 허용된다.

그동안 해외직구대행 업체들은 해외에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 전자파 미인증 기기들을 국내에 유통시켜 왔다. 가령 오픈 마켓에서 해외직구 전문업체와 손잡고 아이폰6, 아이폰6플러스 공기계를 1차 출시국에서 들여오는 방식으로 예약 판매하는 경우 전파법 개정안에 따라 판매업체뿐 아니라 기획전을 연 오픈 마켓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단, 전파법 개정안에 예외조항이 있어 기획전 형태만 아니면 판매처가 전자파 미인증 기기를 판매하다 적발되어도 오픈 마켓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해외직구와 관련한 최근 제품안전규제 강화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다. 앞서 논의한 규제 외에도 여러 정부기관에서 다양한 제품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불량 해외직구 쇼핑몰 공개 등 정보제공을 확대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소비자피해가 잦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은 일반에 공개된다고 한다. 14개 공공기관 28개 시스템 통합피해구제절차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한다. 제품안전과 관련한 정부정책의 적극적 실시가 예고되고 있다.

